

2019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2019.1



CONTENTS

1 2019년도 지원계획

2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

3 2019년 주요사업 안내

4 기타 안내

1 2019년도 지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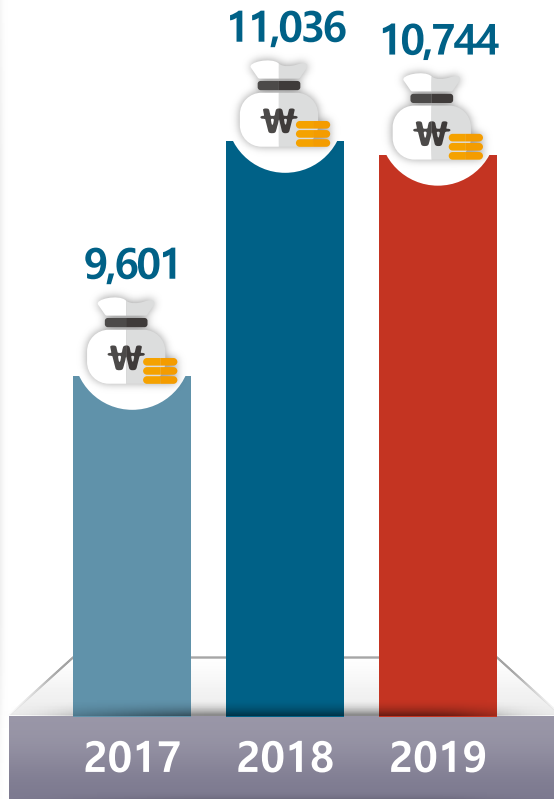
- ▶ 지원 개요
- ▶ 추진 전략
 - (1) 민간과 시장중심의 R&D 지원
 - (2) 기술교류 생태계 조성
 - (3)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 (4) 사람에 투자하는 R&D 지원



지원개요

지원규모

2019년 1조 744억원



지원규모 (억원)

지원내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상이(개별 사업공고문 확인)



지원한도



- 사업별 최대 2년 이내, 2천만원~6억원 이내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무담보, 무이자), 총 사업비의 50~80%
- 기업은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 부담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 지원조건 상이(개별 사업공고문 확인)



기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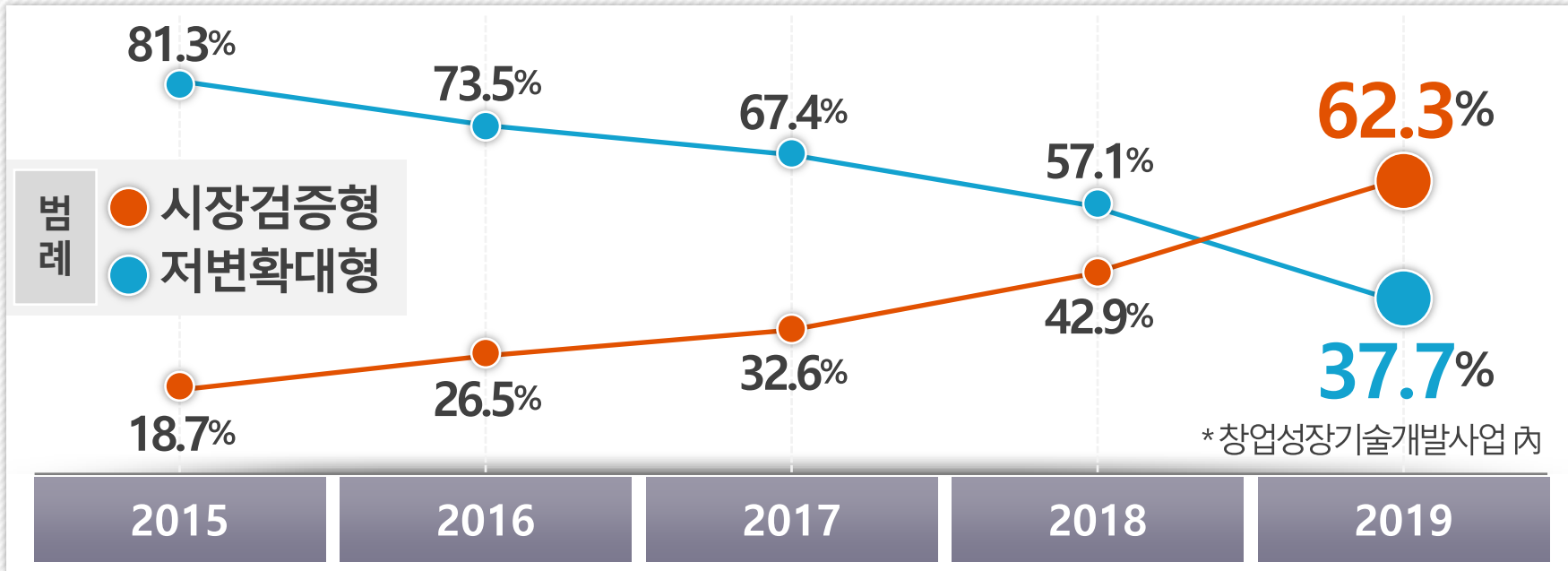
- 기술개발 종료 후 해당시 납부

추진전략_(1) 민간과 시장중심의 R&D 지원

1. 2019년도 지원계획

시장 선별 기능 강화

“ 시장검증/민간투자형 과제의 지원확대 ”



✓ 민간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 등
시장이 선별한 기업을 우선
지원



✓ 일률적 평가 (위원회 방식
대면평가)에서 사업성 검증이
보강된 평가운영

추진전략_(1) 민간과 시장중심의 R&D 지원

1. 2019년도 지원계획

경상기술료 전면도입

“ 기술개발결과물의 예상매출액 등을 사업화 목표로 제시 ”



예상 총매출액



예상 기술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기술개발 결과물 기여도

사업화 가능성 우수기업 선정



“ 매출 발생시에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제도 전면 도입 ”

* 경상기술료 : 매출 발생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추진전략_(2) 기술교류 생태계 조성

1. 2019년도 지원계획

개방형 혁신을 위한 R&D 연계

“ 산학연 혁신주체간 교류활성화로 기술애로 해소 및 개방형 혁신 추진 ”



산산 협력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R&D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R&D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산학연 협력

산학연 Collabo R&D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학연협력신사업R&D바우처

연구기반활용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 바우처

추진전략_(3)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1. 2019년도 지원계획

우수제품 지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우수조달제품 지정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대출자금 지원규모 확대



R&D 사업화 전용보증



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



우수 R&D
제품의
매출 발생 기대



중소기업
체감효과
상승



R&D



창업, 수출 패키지



사업화 지원

추진전략_(4) 사람에 투자하는 R&D 지원

1. 2019년도 지원계획

지원 자금 비례 청년인력채용



정부지원금 총액 기준

4억원당
청년인력 1명 의무채용

청년인력 고용확대



▶ 청년인력 범위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채용시점 기준)

청년인력 채용시 민간부담 완화



의무채용외에

추가 청년인력 채용시
현금부담금을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고용창출



기업부담
완화

청년고용 납부기술료 감면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
채용시
기술료 납부유예

청년인력 채용후

2년간 고용유지시
2년간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감면

2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

- ▶ 중소기업 기업성장 촉진
- ▶ 지원기업 우수사례



중소기업 기업성장 촉진

2.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

중소기업의 매출·고용창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 기여

매출 및 고용 창출

매출액(억원)

19.9

19.4

고용인원(명)

6.8

8.7

특허출원 및 등록(건)

2.4

2.6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과조사 분석결과('18.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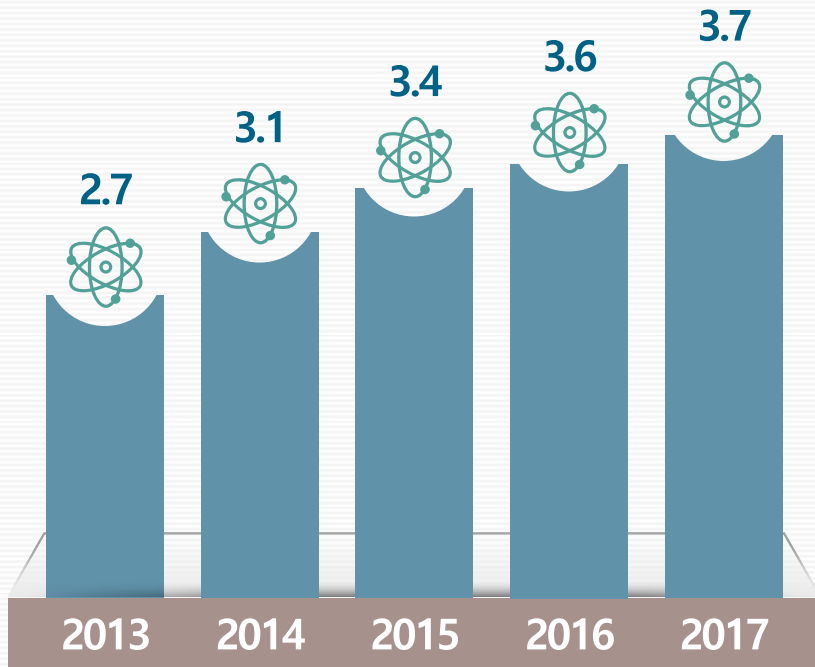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업성장 촉진

2.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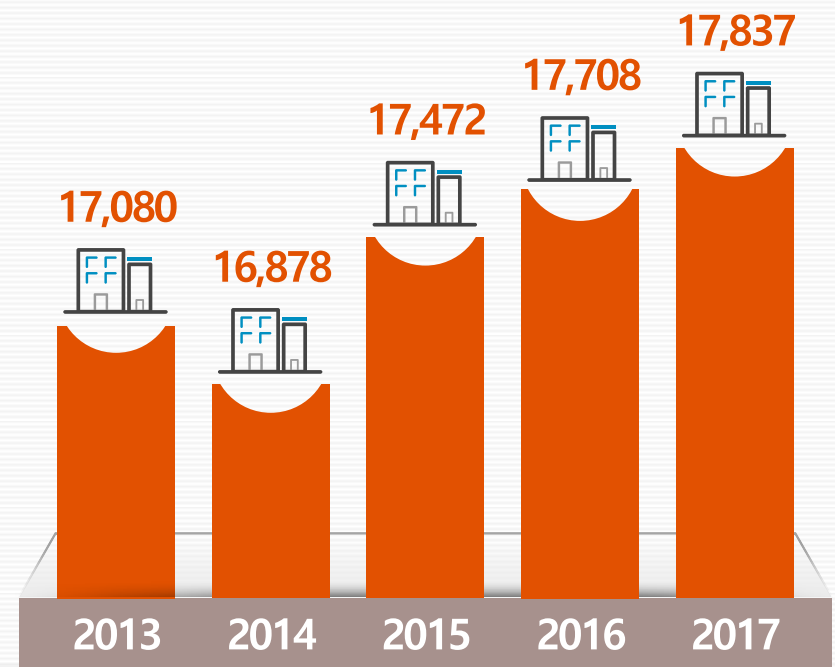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매출·고용창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 기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이노비즈 기업 양적성장

기업부설연구소 (만개)



이노비즈기업 (개)



✓ 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이노비즈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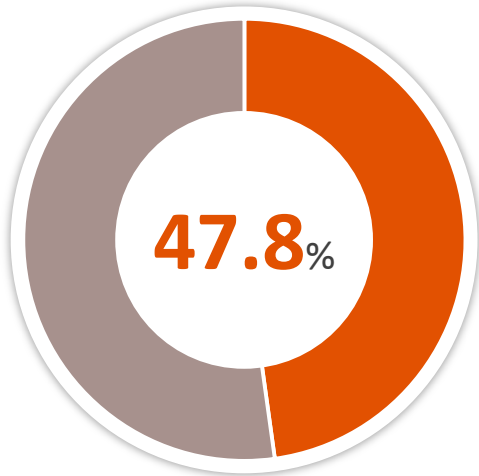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업성장 촉진

2.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

중소기업의 **매출·고용창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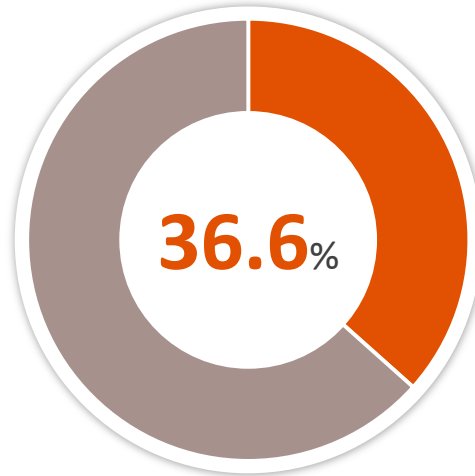
우수 중소기업으로 도약

벤처천억기업 중
지원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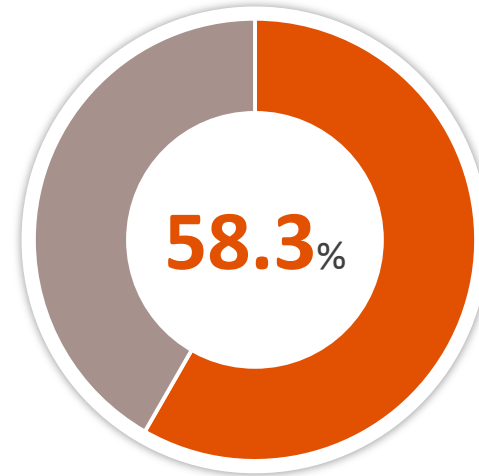
▪ 벤처 천억기업
513개(16년 기준) 중 **245개사**

수출 1천만불 기업 중
지원기업



▪ 수출 1천만불 이상 기업
383개(16년 기준) 중 **140개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
지원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542개(16년 기준) 중 **316개**

지원기업 우수사례

2.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생존을 향상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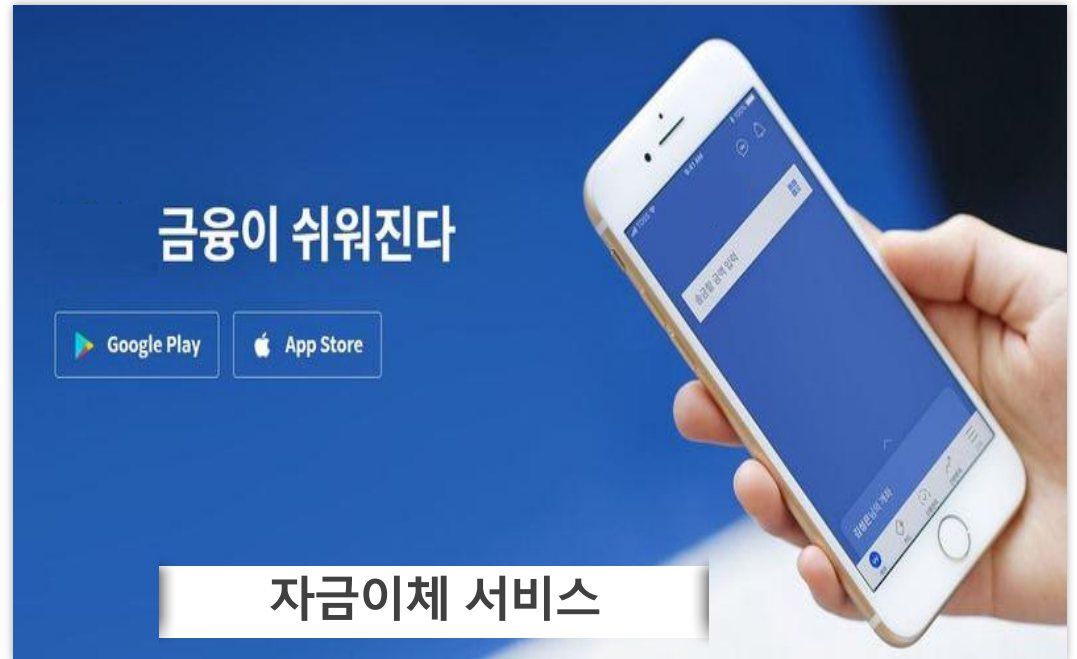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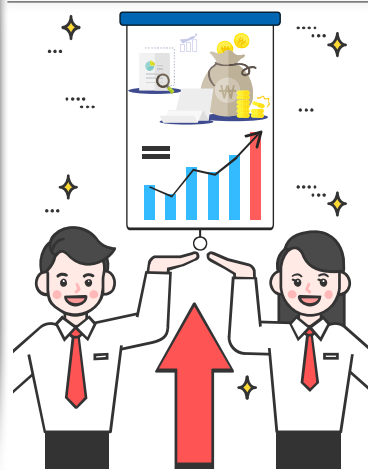
우수사례

비바리000 ('14년~'15년 지원)

간편 송금어플리케이션 개발로
(2017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35순위에 선정

누적다운로드 수
1,300만건

거래금액
13조원 돌파



지원기업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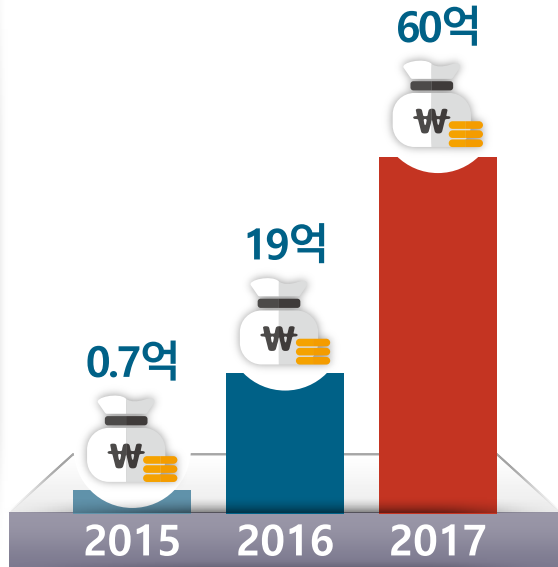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생존을 향상 기여**

우수사례

만나씨000 ('14년~'16년 지원)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된 수경재배 농산물 개발로
카자흐스탄에 대형(연간 300톤 이상 규모) 스마트팜 통합 솔루션 수출계약 체결

매출증가



수경재배

3 2019년 주요 사업 안내

- ▶ 단독 R&D
- ▶ 협력 R&D
- ▶ 지역산업 R&D
- ▶ 인력지원



2019년 주요사업 안내

단독 R&D	협력 R&D	지역산업 R&D	인력지원
창업성장 기술개발 3,598억원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1,868억원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291억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338억원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117억원	연구기반활용 125억원	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 120억원	
공정·품질 기술개발 428억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101억원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 203억원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R&D 36억원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149억원		
재도전 기술개발 43억원	산학연 Collabo R&D 123억원		
	산학연협력신사업R&D바우처 242억원		

* 위 사항은 개별공고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별 신규과제가 없는 사업은 제외

(단독R&D) 창업성장 기술개발

→ 사업 내용

총 사업비 3,598억원 지원대상 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하 중소기업)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01 지원규모	02 지원대상	03 지원금액 및 기간	04 지원내용
디딤돌 창업	1,068억원	일반 창업기업	1.5억원 / 1년 이내	자유공모
혁신형 창업	1,006억원	우수기술보유 창업기업	4억원 / 2년 이내	4차산업혁명 분야 내 자유공모
선도형 창업	289억원	선도분야 창업기업	3억원 / 1년 이내	선도분야 내 기업제안형 과제
TIPS	1,235억원	TIPS 운영사 추천 창업기업	5억원 / 2년 이내	자유공모

- ▶ 우수기술보유 창업기업: 스피노프, A&D(공공기술이전, M&A 포함), 혁신인증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 ▶ 선도분야: 창업기업의 고성장이 가능한 선도분야(지능형 로봇, 사회문제해결 등)를 추후 지정(192月)하여 공고할 예정
- ▶ TIPS 운영사 (44개 운영사 지정): 창업팀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엔젤투자회사,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선도벤처·기술대기업 등

(단독R&D)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사업 내용

총 사업비 117억원 지원대상 혁신형 및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 협·단체 정부출연금 비중 65% 이내

→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01	02	03	04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내용
제품 서비스화	57억원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2억원 / 1년 이내	융합신서비스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조업+서비스 융합지원
신규 서비스 창출	35억원	서비스 업종 영위기업	1.5억원 / 1년 이내	서비스 R&D 전략분야 비즈니스모델 개발
업종 공통서비스	25억원	서비스기업 컨소시엄 업종별 협·단체	2억원 / 1년 이내	동일한 서비스 업종 공동활용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 ▶ 서비스 R&D 전략분야: 미디어, 레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직, 스마트 금융 등
- ▶ 제품서비스화: 제조기업이 생산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신사업 창출을 지원
- ▶ 신규서비스창출: 공유플랫폼 개발 등을 통한 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구현을 지원
- ▶ 업종공통서비스: 중소기업 컨소시엄 또는 협·단체와 회원사가 공동활용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지원

(단독R&D) 공정품질 기술개발

3. 2019년 주요사업 안내

→ 사업 내용

총 사업비	428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	정부출연금 비중	75% 이내
-------	-------	------	--------------------	----------	--------

→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01 지원규모	02 지원대상	03 지원금액 및 기간	04 지원내용
제품 공정개선	323억원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5천만원 / 1년이내	제품개선 지원 공정개선 지원
뿌리 기업공정	105억원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1억원 / 1년이내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

-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단독R&D)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R&D

3. 2019년 주요사업 안내

→ 사업 내용

총 사업비	36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부출연금 비중	65% 이내
-------	------	------	------	----------	--------

→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01 지원규모	02 지원대상	03 지원금액 및 기간	04 지원내용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13.5억원	중소기업	6억원 / 2년이내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고도화 개발
K-앱시스트 기술개발	22.5억원	중소기업	6억원 / 2년이내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 ▶ 스마트공장 솔루션 : 제조데이터의 수집 / 분석, 생산설비 제어, ERP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엔진) 개발
- ▶ 앱시스트(Appsist) :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 2014년부터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책으로 개별기업의 도제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과제

(협력R&D)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 사업 내용

총 사업비	1,868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국내외수요처, 투자협약기업 사업화지원기업, 기술전문기업	정부출연금 비중	60~75% 이내
--------------	---------	-------------	--	-----------------	-----------

→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01 지원규모	02 지원대상	03 지원금액 및 기간	04 지원내용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589억원	중소기업 + 국내외수요처, 투자협약기업	6억원 / 2년이내 (민관투자과제는 10억원)	구매수요연계 R&D지원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194억원	혁신형 중소기업 + 사업화지원기업	(1단계, 기획지원) 3천만원 / 6개월이내 (2단계, R&BD) 6억원 / 2년이내	중소기업 간 공동 R&BD지원
기술전문 기업협력	85억원	중소기업 + 기술전문기업	1억원 / 1년이내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R&D 지원

- ▶ 국내외 수요처 :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업종, 업력, 매출액, 신용등급 충족), 해외기업 등
- ▶ 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사업화지원기업 : 사업화 (디자인, IP,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지원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 기술전문기업 (166개 지정) : 설계해석, 시험분석, 연구개발, 디자인, 임상실험, 시제품 제작 등 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한 기술서비스 기업

(협력R&D) 연구기반 활용

→ 사업 내용

총 사업비	125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부출연금 비중	60~70% 이내
-------	-------	------	------	----------	-----------

→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01 지원규모	02 지원대상	03 지원금액 및 기간	04 지원내용
공유 확산형	24억원	중소기업	5백만원 / 1년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지원
연구 집중형	101억원	중소기업	7천만원 / 1년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등
- ▶ 공유확산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3백만원까지 가능하고, 1회 장비이용료가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5백만원까지 지원

(협력R&D) 선도연구기관 협력

→ 사업 내용

총 사업비	101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 선도연구기관	정부출연금 비중	75~100% 이내
-------	-------	------	---------------	----------	------------

→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01 지원규모	02 지원대상	03 지원금액 및 기간	04 지원내용
(1단계) 산연협력 희망기업진단	4억원	중소기업	2백만원 / 1개월	기술애로요인분석 기술혁신역량진단 R&D지원 필요성
(2단계) 산연협력 기술개발	97억원	중소기업 + 선도연구기관	3억원 / 1년이내	전담연구인력 지원 전문가 및 장비 매칭 공동연구개발 지원

-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기술로드맵 28개분야 관련한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 선도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출연연, 전문연 (41개)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 예정

(협력R&D)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3. 2019년 주요사업 안내

→ 사업 내용

총 사업비	149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부출연금 비중	50~80% 이내
-------	-------	------	------	----------	-----------

→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01 지원규모	02 지원대상	03 지원금액 및 기간	04 지원내용
R&D 기획지원	53억원	중소기업	(멘토링)5백만원/2개월이내 (전략)25백만원/4개월이내	기술·시장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	50억원	중소기업, 공과대학 및 출연연	3천만원 / 9개월이내	현장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전문가 매칭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46억원	위기지역·위기업종 영위 기업	1억원 / 1년이내	신제품개발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 위기지역·위기업종 영위 기업: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또는 해당 시도 내 위기업종 중소기업

(협력R&D) 산학연 Collabo R&D

3. 2019년 주요사업 안내

→ 사업 내용

총 사업비	123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 대학 또는 연구기관	정부출연금 비중	75% 이내
--------------	-------	-------------	-------------------	-----------------	--------

→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01 지원규모	02 지원대상	03 지원금액 및 기간	04 지원내용
산-학 협력	86억원	중소기업 + 대학	(1단계, 예비연구) 0.5억원 / 8개월이내	대학 + 중소기업 협력 R&D
산-연 협력	37억원	중소기업 + 연구기관	(2단계, R&D) 4억원 / 2년이내	연구기관 + 중소기업 협력 R&D

-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2단계)
- ▶ 예비연구 (Proof of Concept, 개념증명): 특정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

(협력R&D) 신사업 R&D바우처

→ 사업 내용

총 사업비	242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 대학 또는 연구기관	정부출연금 비중	75% 이내
-------	-------	------	-------------------	----------	--------

→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01	02	03	04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내용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242억원	신사업분야 진출 중소기업 + 바우처 서비스기관	2억원 / 1년 이내	대학, 연구기관 연구인프라 활용 (바우처로 지원)

- ▶ 중소기업: 업력 10년 이상이거나,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종사자수 30인 이상 중소기업
- ▶ 바우처 서비스 기관 :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보유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역산업 R&D) 지역 중소기업 대상 R&D

→ 사업 내용

총 사업비 614억원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정부출연금 비중 70% 이내

→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01	02	03	04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내용
지역기업 혁신성장지원	291억원	지역 우수중소기업	2억원 / 1년 이내	기업성장에 필요한 신제품 상용화 R&D지원
융복합단지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120억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 또는 입주확약 중소기업	3억원 / 2년 이내	기업제안형 상용화 R&D 지원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 바우처	203억원	지역 중소기업 +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1~2억원 / 1년 이내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협력R&D

▶ 지역 우수 중소기업 : 매출액 50~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중 특성화 조건 (고용, 수출, 매출액 증가율, R&D)을 2개이상 만족한 기업을 지자체에서 지정 ('18년 194개사 지정)

▶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현황 참고 ('18.11.5, 산업부 고시 2018-193호) : 혁신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산업기술단지, 기업도시, R&D 특구 등

(인력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 사업 내용

총 사업비 338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부출연금 비중 50~100% 이내

→ 내역사업별 상세내용

	01 지원규모	02 지원대상	03 지원금액 및 기간	04 지원내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82.8억원	부설연구소 보유 기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건비 50% / 3년 이내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 파견 지원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150.6억원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기준연봉 50% / 3년 이내	신진 연구인력 (학석박사)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56.7억원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5천만원 / 3년 이내	고경력 연구인력(대학, 출연연 등) 채용 지원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30억원	대학원-기업 간 컨소시엄	3억원내외 / 5년 이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지원

- ▶ 기준연봉 : 학사 3천만원, 석사 4천만원, 박사 5천만원
- ▶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사업('19년 예산 : 18.3억원)은 계속과제만으로 운영하여 '19년 신규 미지원

4 기타 안내

- ▶ 중소기업부 R&D 지원방법
- ▶ R&D 준비시 유용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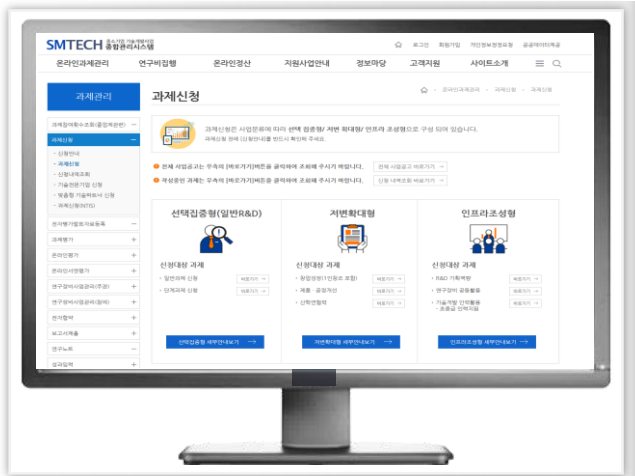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방법

⇒ 사업광고



-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홈페이지 광고
 - ↳ 사업별 추진일정은 통합공고문 참조
-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 <http://www.mss.go.kr>
- ✓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 <http://www.smtch.go.kr>

⇒ 신청방법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 <http://www.smtch.go.kr>



-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광고 참조

R&D 준비 시 유용한 정보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동영상강의

SMTECH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

과제신청 과제평가 과제수행 연구비집행 연구비정산 정보마당

고객지원

- 고객의 소리 +
- 이용 매뉴얼 -**
 - 시스템 이용 매뉴얼
 - 과제신청 연구비사용시용례이션
 - 온라인 서면평가 가이드
 - 동영상강의**
- 고객지원센터 +

동영상 강의

이 동영상 강의는 2018년도 사업기준 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사업관련 동영상 강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도움말](#)

익스플로러 11에서 플래시가 안 보이는 경우 익스플로러 설정 안내

중소기업R&D지원사업 [디지털북 다운로드](#) [모바일 동영상 보기](#)

- 01.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기업과제)
- 02. 창업성장기술개발(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0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수출기업기술개발)
- 0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혁신형기업기술개발)
- 05.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06. 공정-품질기술개발
- 07. 산학연협력기술개발(첫걸음협력, 도약협력)
- 08. 산학연협력기술개발(전략협력)
- 09. 산학연협력기술개발(연구장비공동활용)
- 10. 중소기업R&D역량제고(R&D기획지원)
- 11. 중소기업R&D역량제고(맞출형기술파트너지원)
- 12.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구매조건부-국내수요처)
- 1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해외수요처)
- 14.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중소기업네트워킹형기술개발)
- 15.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기술전문기업협력기술개발)
- 16. 재도전기술개발
- 17.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 18. WC300프로젝트R&D

일반강의

- 01. 사업계획서 중요성
- 02. 온라인과제신청방법
- 03. 사업계획서 작성 - Part1
- 04. 사업계획서 작성 - Part2
- 05. 대면평가이렇게 준비하세요
- 06. 전자철약안내
- 07.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방법
- 08. 협약변경 안내
- 09. 최종평가 준비 방법
- 10. 기술료 안내
- 11. 중소기업기술로드맵

R&D 기획역량강화 교육

- 01. R&D 기획의 이해
- 02. R&D 기획 방법론
- 03. R&D 기획 프로세스
- 04. 우수사업계획서 기반 R&D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05. R&D 과제수행 기획
- 06. 사업화 기획 및 국내외 우수기술 기획 사례
- 07. R&D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및 연구노드 개요
- 08. R&D 시나리오 기법
- 09. 기술트리 방법론
- 10. 4차 산업혁명과 기술트렌드



종합관리시스템

- ▶ R&D 기획 방법 및 프로세스
-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 온라인 과제 신청방법
- ▶ 대면평가 준비
- ▶ R&D 과제수행 (협약, 사업비 집행, 최종평가 등)
- ▶ 사업화 기획 및 우수기술 기획 사례
- ▶ R&D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중소 · 벤처기업이 튼튼한 국가실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아갑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1-1

...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약 2,999개(신규 1,996개) 과제(예산 3,598억 원)
 - '18년 지원현황 : 7,682개 과제 신청, 1,304개 과제 선정(5.9:1)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후 7년 이하이며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
 -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가), 초기 전문VC, 선배 벤처기업 등 TIPS 운영사의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최대 2년, 5억 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 창업기업과제(2,363억 원) : 일반 및 혁신형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디딤돌 창업과제(1,068억 원) :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창업 저변 확대형 단기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 원 이내)
 - 혁신형 창업과제(1,006억 원) : 고기술·유망기술 등 4IR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2년, 4억 원 이내)

- 선도형 창업과제(289억 원, 신규) : 혁신성장 선도분야 중 창업기업의 성과 창출 및 창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1년, 3억 원 이내)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1,235억 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 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5억 원 이내)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창업기업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혁신형 창업과제	최대 2년, 4억 원		품목지정 (4IR 분야)
	선도형 창업과제	최대 1년, 3억 원		지정공모 (혁신성장분야)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 주도형(TIPS)	최대 2년, 5억 원		자유공모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확대
 - 혁신역량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1,006억 원)하고, 지원규모 및 기간을 상향 (('18) 1년, 2억 원 → ('19) 2년, 4억 원)
- 내내역사업 조정
 - (신설) 창업기업 과제 내 선도형 창업과제 신설(1년, 3억 원 이내, 혁신성장분야(지정공모))
 - (폐지) 기술창업투자연계 과제 내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과제 폐지(혁신형 창업과제 지원유형으로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과제 별 공고 참조, '18.1월 중 공고 예정)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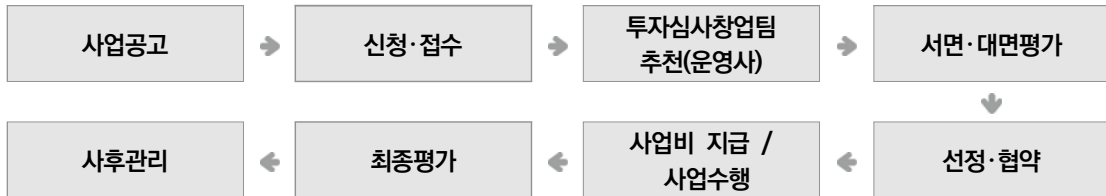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 된 근거 서류

처리 절차

○ (창업기업 과제)



○ (기술창업투자연계 과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2, 397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033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알려주세요!

- Q**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자격요건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관련 사항을 해소한다면 신청 가능하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창업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외에 참여기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A** 참여기업은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참여토록 하시면 됩니다.
- Q**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A**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 Q**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세부 내용은 각 신청차수별 공고문에 상세히 표기할 예정이며, 차수별 공고문은 '19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R&D 통합공고문에 수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www.smtech.go.kr에서 각 차수별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1-2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새로운 BM발굴 및 신시장 창출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68개사 내외(예산 117억 원)
 - '18년 지원현황 : 신청 326개 과제중 제품서비스화 23개, 신규서비스창출 11개, 업종공통서비스 11개 총 45개 선정지원 (예산 83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제품서비스화과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제품(서비스융합 대상제품)을 보유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획득 또는 유효한 인증서 보유 기업
- (신규서비스창출과제) 서비스업종 영위기업
- (업종공통서비스과제) 서비스업 영위 기업으로서 본점과 지점, 복수의 사업장 보유 기업, 중소기업 컨소시엄(2개사 이상), 업종별 협·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제품서비스화과제)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의 서비스화 개발을 통한 신사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 (신규서비스창출과제) 기술창업이 활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비즈니스모델 구현 지원



- (업종공통서비스과제) 본점과 지점, 복수의 사업장 보유 기업, 업종별 단체와 회원사 등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서비스화	최대 1년, 2억원 이내	65% 이내	자유응모
신규서비스창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자유응모
업종공통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이내		자유응모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제도 및 평가체계 개선
 - 기획기관 참여방법 : ('18년 사전매칭 필수 → '19년 선택적 참여)
 - 비즈니스 모델 평가 강화 : 1단계) 기술성평가(BM 기술구현 가능성 위주 평가) → 2단계) BM평가(비즈니스 모델 심층 평가)
 - 평가체계 개선 : 평가방법/기준 개편 및 사업계획서 항목 간소화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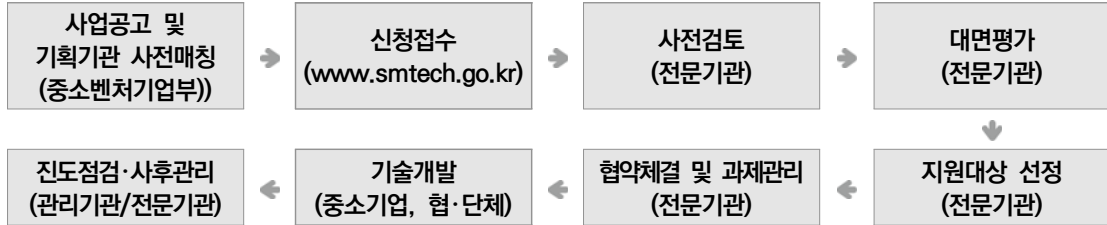
- 창의·도전성, 기술성 :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기술구현 가능성, 서비스 모델 개발의 창의·도전성 및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 사업성 : 비즈니스모델 혁신성 및 차별성, 서비스 사업화 계획 타당성, 수익창출모델 적절성 및 구체성, 시장진입가능성, 수출가능성, 고용 창출 가능성

제출 서류

- 평가단계별(신청·접수단계 / 대면평가단계)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19.2월	3월	4~5월	6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년간 신규지원 경쟁률

○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3.4:1	7.2:1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7, 0319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이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1-3

...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1,123개 기업(전체 예산 428억원)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969개 기업, 323억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154개 기업, 105억원)
 - '18년 지원현황 : (제품·공정개선) 2,049개 기업 신청, 1,032개 기업 지원
(뿌리기업공정) 230개 기업 신청, 120개 기업 지원

지원 대상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미만인 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지원 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기존 공정 및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과제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지원
 -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과제당 1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제품공정 지원대상 제한: 전체 중소기업→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미만 중소기업
- 공정개선 과제에 적합한 서식수정(사업계획서, 최종평가표)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과제 우선지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평가체계 개편 : 대면평가→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현장평가로 변경
- 신청·접수 시기조정: (제품) 2,4,7 (뿌리) 2,7 접수
- 우대가점제도 개선: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5점)추가 , R&D기획지원 사업추천과제(1점)삭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9년 1월	'19년 2월, 4월, 7월 (3회 신청·접수 예정)	'19년 3월~9월	'19년 4월~10월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19년 1월	'19년 2월, 7월 (2회 신청·접수 예정)	'19년 3월~9월	'19년 4월~10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기업의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등을 현장에서 평가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서면평가 후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등에 대한 현장평가(서면평가 60% + 현장평가 40% 반영하여 선정)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공정개선과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처리 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사업신청서류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온라인 접수, smtech)
요건검토	전문기관
서면평가(뿌리기업공정만 해당)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전문기관 (해당분야 전문가)
과제선정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관리,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위원회)
사후관리	전문기관

3년간 신규지원 경쟁률

- 제품공정기술개발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제품공정	2.9:1	2.8:1	3.0:1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뿌리기업공정	1.8:1	1.7:1	1.9:1

문의처

- 담당부서, 자세한 내용 제공 홈페이지 순으로 안내
- 중소기업기술정보보호과 : 042-481-4460, 895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 042-388-0761, 0762, 19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담당부서, 자세한 내용 제공 홈페이지 순으로 안내

궁금해요! 중기씨

Q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 제외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Q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Q “기존제품”에 타사의 기존제품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본 사업은 자사의 기존제품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사의 제품을 개선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1-4

중소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제고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관련 핵심솔루션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16개 과제(전체예산 36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중소기업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제품·공정설계-생산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지원
- (K-앱시스) 숙련기술자의 노하우 디지털화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앱기반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최대 2년, 6억 원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K-앱시스 기술개발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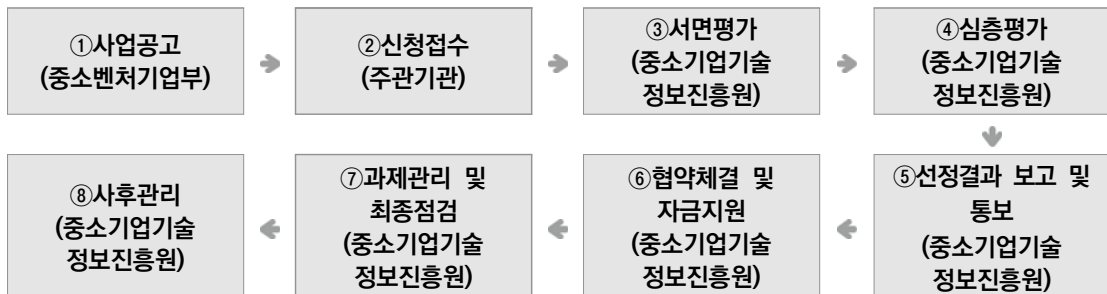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 및 서식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공통서식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 추진일정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18.1월 末	1월~2월	3~4월	5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2-481-440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55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1-5

... 지역우수(스타)기업 상용화 R&D 지원

지역주력산업분야 관련 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우수(스타)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143개 과제(예산 291억원)

지원 대상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지역우수(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로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우수(스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성장가능성 및 지역사회 공헌도를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우수(스타)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제품 상용화 R&D 지원
 - (유형) 자유공모, (기간) 1년, (예산) 연 2억원 내외
 - 국비 지원 2억원 당 1명의 청년 고용 의무
 - 매출 50-400억 규모 중소기업 중 특성화 조건을 만족한 기업을 지자체에서 '지역우수(스타)기업'으로 지정('18년 194개사 지정)
 - 동 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우수(스타)기업'만 신청 가능**

참고.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 신산업, 청색청정환경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참고. 지역우수(스타)기업 특성화 기준(안)

구분	특성화 항목		기준
고용 창출형	청년인재 고용	상시근로자 中 지역청년인재 비중	30% 이상
	지역고용 안정	상시근로자 中 정규직 비중	70% 이상
		최근 3년 평균 고용 증가율	5% 이상
수출형	수출액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이상
성장형	매출액증가율(CAGR)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기술 혁신형	R&D투자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	1%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주력산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지역내 보유

신청·접수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25, 3727, 3729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참조

궁금해요! 중기씨

Q 어떤 기업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주관기관의 경우 해당지역에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지역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며, 지자체에서 선정한 지역우수(스타)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으로는 타 지역 중소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Q 지역우수(스타)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특성화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 중소기업 중 지자체에서 지정한 기업을 의미하며, 해당 기업에 한하여 동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주관기관)이 주어집니다.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1-6

... 국가융복합단지와 연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국가융복합단지 조성 및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 대상 69개 과제(예산 120억원)

지원 대상

-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종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로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또는 입주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제안형 상용화 R&D 지원
 - (유형) 자유공모, (기간) 최대 2년, (예산) 연 3억원 내외
 - 동 사업은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한해 지원**, 입주 협약기업은 신청 시 협약서 제출

참고. 시·도별 국가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센텀, 문현, 동삼지구, 북항 일원	충북	청주, 혁신도시, 증평, 괴산, 충주 일원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일원	충남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일원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일원	전북	전주·익산·완주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대전	유성구, 대덕구, 동구 일원	전남	빛가람동 일원
울산	중구 우정동, 북구 매곡동, 중산동, 달천동, 남구 두왕동 일원	경북	김천시, 구미시 일원
세종	조치원 산업단지, 명학산업단지	경남	항공MRO집적단지, 항공국가산단, 사천 외국인 투자지역 등
강원	원주혁신도시 및 횡성 일원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혁신도시 일원

* 국가융복합단지 세부 위치는 사업 모집공고 시 별도 안내

신청·접수

-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25, 3727, 3729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 참조

• 궁금해요! 중기씨

Q 어떤 기업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주관기관의 경우 국가융복합단지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으로는 타지역 중소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Q 동 사업에서 언급된 국가융복합단지 입주(예정)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시·도별 지정된 국가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 신청 시 입주 약약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서 입주(예정)기업으로 간주합니다.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1-7

... 재창업 기업 및 사업전환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재창업 기업 및 사업전환 승인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약 33개 과제(전체 예산 43억원)
 - '8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249개 중 34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1.3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재도전 과제)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7년 이하) 또는 지원 결정이후,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예비 재창업자
- (민간투자연계 과제)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사업화 지원대상 기업 중 민간 투자를 유치한 재창업 중소기업*
 - * 실패 사업체의 폐업 완료 후 재창업한 기업
- (사업전환 과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 계획 승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재도전 과제) 재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지속적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업인의 기술력 및 경영노하우 사장 방지
- (민간투자연계 과제) 우수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한 재창업 기업의 시장진입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사업전환 과제)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계획 이행 및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재도전 과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80% 이내	자유응모
민간투자연계 과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80% 이내	자유응모
사업전환 과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응모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재창업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연계 과제 신설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독창성 및 차별성, 기술개발 목표 도전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연구 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 가능성
- 사업성 : 국내외 목표시장 규모 및 설정근거 구체성, 사업화 계획의 경제성, 양산·판로 등 사업화 계획 실현가능성
- 재기역량 : 실패 경험(지식)과의 연관도 및 발전도, 재창업 의지 및 이전 창업 자원 활용정도
- 수출·고용역량 : 목표해외시장 이해도 및 수출망 확보계획, 연구인력 고용 및 유지계획 여부

제출 서류 *사업 참여를 위한 제출서류 명칭 열거*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과제별 자격요건 필수서류 등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재도전 과제	'19.1월	2월	3월~5월	6월
사업전환 과제	'19.1월	4월	5월	6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년간 신규지원 경쟁률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도전 과제	-	6.5:1	8.4:1
사업전환 과제	-	-	2.5:1

문의처

- 중소기업부 재기지원과 : 042-481-684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042-388-0331, 0341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씨

- Q** 재창업 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재도전 과제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Q**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A**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거 기업이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용어설명

재도전 기술개발사업이란? · 재창업 기업의 안정적·지속적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1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신규과제 약 412개 과제(전체 예산 1,589억원)
- * '18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374개 중 362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2.1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지정공모과제) 국내·외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자유응모과제)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를 받은 과제

구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주관기관	수요처(투자기업)
국내수요처 R&D (지정공모, 자유응모)	최대 2년, 5억원	60% 이내	25% 이상	15% 이상
해외수요처 R&D (자유응모)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35% 이상	-
R&D PIE	최대 2년, 6억원	60% 이내	25% 이상	15% 이상
민관공동투자 R&D (지정공모, 자유응모)	최대 2년, 10억원 (투자기업 5억원 포함)	37.5% 이내	25% 이상	37.5% 이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안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민간부담금 확대 : 국내수요처 자부담 15% 중 10%는 현물, 5%는 현금부담
-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분야 선점을 위해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6억원 이내)

신청·접수

- 과제별 공고 참조('19. 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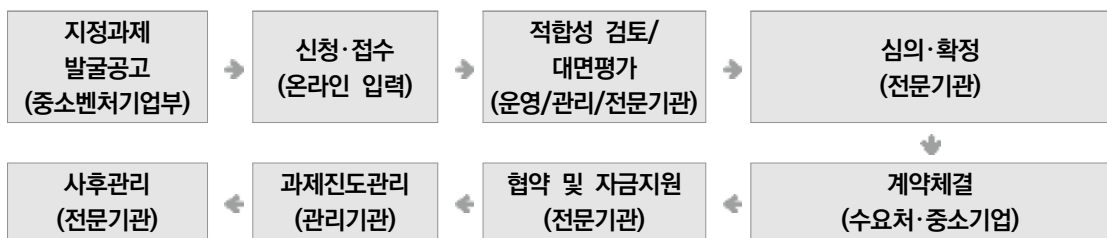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등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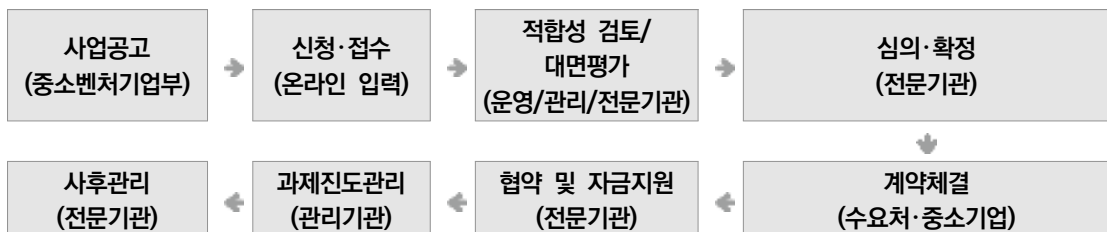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출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 (전문기관) 기정원 (관리기관) 지방청, 대중소재단 (운영기관) KOTRA, 기품원

신규지원 경쟁률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내수요처	1.9	2.2	3.1
해외수요처	2.8	2.8	4.4
민관공동	1.7	1.5	2.1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58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12~8719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씨

Q 수요처(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지정공모 및 자유응모과제 모두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업제안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2

... 3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약 94개 과제(전체 예산 194억원)
- * 계속 과제 포함

지원 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참여 불가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1단계 : 기획지원)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개발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 (2단계: R&BD) 기획지원이 완료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구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수행기관
기획지원	최대 6개월, 30백만원	90% 이내	10% 이상(현금)
R&B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35% 이상

* 연차별 지원한도 없음(예 : 1년, 6억원 등 가능)



신청·접수

- 과제별 공고 참조('19. 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획지원 선정)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R&BD 선정)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성성 및 우수성 등의 평가를 통해 R&BD사업으로 연계(참여비율, 성과분배 등을 포함한 계약서 체결)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근거서류

지원 절차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481-445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22, 0723
-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씨

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기관(1개), 공동개발기관(2개 이상의 기술개발기업, 사업화지원기관)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Q 1단계 기획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지원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Q 혁신형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2-3

... 기술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설계·해석,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한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R&D를 수행함으로써 R&D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85억원(신규 74개 과제 59.5억, 계속 76개 과제 25.5억)
- * '18년 지원현황 : 239개 기업 신청, 76개 기업 선정, 기업 당 평균 75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 기술전문기업(K-ESP)의 의무적 참여 필요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유의사항 등

- 기술전문기업과 필수적으로 사전 매칭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하므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미제출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74개, 59.5억원) : 중소기업과 기술전문기업 간 협력 R&D 지원
 - * 정부출연금은 과제당 1억원 한도(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부담금의 현금계상비율 변경
 - 현금계상비율 축소 : 민간부담금 중 현금계상비율을 60%에서 40%로 변경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9년 기술전문기업 협력R&D사업 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6주
- 처리기간 : 접수완료일로부터 2개월이내
 * 처리기간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과제의 창의·도전성 및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등
- 사업성 : 고용 및 매출 가능성, 생산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
 * 세부 평가항목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의 사업별 공고를 참고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서(협·단체 : 협·단체 확인서)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증빙자료 포함)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 추진일정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기술전문기업 협력R&D	'18.1월	'18.2월~'18.3월	4~5월	6월~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2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23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연구기반 활용

2-4

... 연구장비, 장비전문인력의 공동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과 협력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125억원

지원 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운영기관) 사업홍보, 전담인원 채용,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이용실적의 10%를 연구기반활용촉진비로 지급
-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의 60~70%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구분	기업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공유 확산형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70% 이내(최대 5백만원 이내)	30% 이상(현금)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	60% 이내(최대 5백만원 이내)	40% 이상(현금)
연구 집중형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70% 이내(최대 70백만원 이내)	30% 이상(현금)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	60% 이내(최대 70백만원 이내)	40% 이상(현금)

* 공유확산형은 최대 3백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모두 소진 시 추가구매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검토 후 최대 2백만원 추가 지원

*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을 합산하여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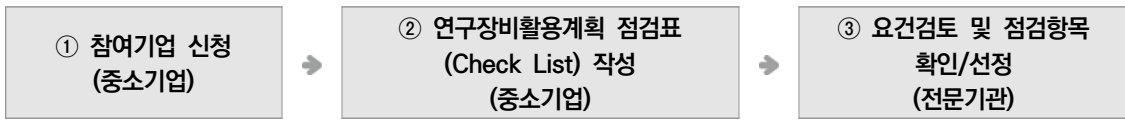
-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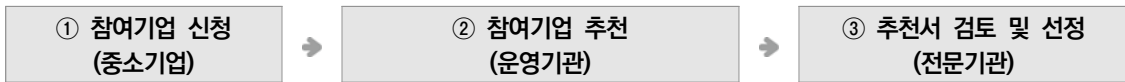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 공유확산형



- 연구집중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8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시

Q 공유확산형과 연구집중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공유확산형은 연구장비를 활용하려는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가능하며, 연구집중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합니다.

Q 연구집중형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운영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에게 연구집중형 지원목적에 타당한 기업으로 추천을 받아야 참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2-5

... 선도연구기관을 활용한 중소기업 R&D 전주기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 수여가 많은 연구기관을 활용한 R&D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101억원

지원 대상

- (선도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출연연, 전문연 등의 연구기관
- (참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②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1단계)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2단계)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R&VD 코디네이팅 지원
 - (3단계)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20년 이후 예정)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희망기업 진단	기업 진단, 2백만 원	100% 이내
(2단계) 기술개발 지원	최대 1년, 3억 원	75% 이내

*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하여(1단계) 추천한 과제에 대해 2단계 이후 지원하며 1단계 지원금은 기업진단을 하는 운영기관에 지급 ('19년에는 1,2단계만 지원하며, 3단계는 '20년부터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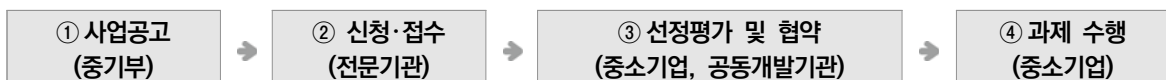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도연구기관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사업추진 역량, 운영전략의 적정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단계 R&VD지원과제 평가) 대면평가 →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산연협력 적합도, 기술보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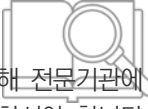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8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참조

• 궁금해요! 중기씨

- Q**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과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과제는 선도연구기관에서 발굴한 과제를 자체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하고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Q** 선도 연구기관은 어떤 연구기관인가요?
- A**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역량이 우수한 2~3개 기관을 선정하여 1~2월 중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 용어설명

선도연구기관이란? · 중소기업 R&D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위해 출연연·전문연 등의 연구기관 중 우수한 연구인프라 및 사업 추진역량 등을 가진 기관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란? · 기존 R&D에 가치창출을 추가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 의미(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성과 강조)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2-7

...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교육과 기획을 지원하고,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547개 과제 내외, 149억원
- R&D기획지원(53억원) : 340개 과제 내외 / 4,000명 교육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50억원) : 167개 과제 내외
- 위기지역 Scale-up R&D 지원(46억원) : 40개 과제 내외(R&D과제) 등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R&D 기획지원사업
 - (멘토링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전략과제) 정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R&D 기획역량강화 교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사업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학컨설팅센터) 국·공·사립 공과대학 및 출연연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또는 해당 시도 내 위기업종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R&D기획지원)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신기술의 기술·시장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기획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R&D 쏠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 및 코칭
- (맞춤형기술파트너)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기획지원	멘토링과제	최대 2개월, 5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전략과제	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2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매출액 50억원 미만	최대 9개월, 30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50억~100억원 미만		6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100억원 이상		50% 이내	자유응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역혁신기업 R&D지원	최대 1년, 100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R&D 중소기업의 수혜 확대를 위한 지원범위 강화
 - 전략과제의 지원대상은 정부 R&D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멘토링 과제의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기업 맞춤형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
 - 기업이 적기에 R&D 기획역량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코칭 운영체계 명확화를 통해 근접 중소기업의 애로해결
- 기획지원사업 내실 제고를 위한 기획기관 실효성 강화
 - 기획 분야별 집중 지원을 위해 기획기관 지정형 기관으로 통합 운영
- 공학센터 선정기준 확대
 - 국·공립대학('17) → 우수 사립대학 포함('18) → 출연연 포함('19)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 사업계획서 신청 : 테크노파크 홈페이지(경남, 울산, 전남, 전북)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등록 완료 후 방문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R&D기획지원) 사업계획서 파트,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 (기획역량강화 교육)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맞춤형기술파트너
 - (과제신청)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해결계획서, 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참여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위기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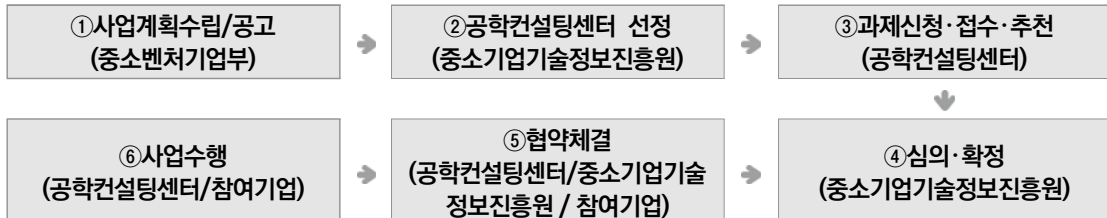
처리 절차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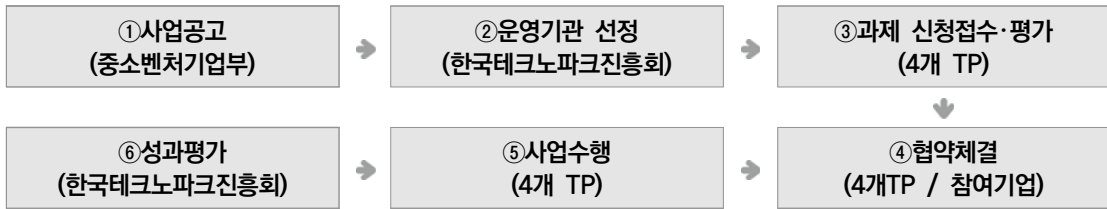
- R&D기획지원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공모차수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R&D 기획 지원	R&D 기획지원	멘토링과제	1차	'19.1월초	2월초	3월	3~4월
		전략과제	2차	'19.3월초	4월초	5월	5~6월
	기획역량 강화교육·코칭	1차	'19.1	수시	-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1/2차	'19.2 / 6	3~4 / 6~7	4~5 / 7~8	6 / 9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지원		1차	'19.3	수시	-	-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 0317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 02-6009-3805, 02-6009-3807
-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 Q**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 A**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Q**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A**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공과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용어설명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기술애로란? ·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산학연 Collabo R&D

2-8

... 산학연 협력R&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123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시,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 ① 예비연구(PoC) → ② 사업화 R&D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75% 이내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최대 2년, 4억원	75% 이내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75% 이내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최대 2년, 4억원	75% 이내

* '19년에는 1단계 예비연구만 지원하며 2단계 사업화 R&D는 '20년부터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예비연구)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화 기술개발)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3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알려주세요!

- Q** 1단계 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1단계 예비연구결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되는 50% 과제만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1단계 예비연구 신청 시에 예비연구 수행 계획만 제출하면 되나요?
- A** 아닙니다. 예비연구 신청시에 2단계 사업화기술개발계획까지 포함한 전체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단계 계획은 개략적으로만 작성하시면 되며, 상세계획은 1단계 예비연구 수행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용어설명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란? ·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사업화를 확인하는 단계로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2-9

... 산학연협력 R&D 활성화를 통한 신사업 분야 진출 및 혁신성장 촉진

새로운 시장 확대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산학연협력 R&D를 통해 신사업 분야의 기술획득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242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 ① 업력 10년 이상 ②매출액 50억원 이상 ③ 상시종업원 30인 이상
- (바우처 서비스 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사업 분야로의 업종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서비스(R&D)를 바우처로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최대 1년, 최대 2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과제 선정평가) 요건검토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업종확장 정도,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내용의 적정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8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주세요!

- Q** 신사업 R&D바우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이 바우처서비스기관(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연구과제 신청은 중소기업이 하나요?
A 네, 바우처서비스기관과 중소기업이 협의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은 중소기업이 하면 됩니다.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2-10

... 지역중소기업의 공동협력 및 문제해결형 R&D 지원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소, 기술전문기업 등과 협업 모델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규모

-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대상 133개 과제(예산 203억원)

지원 대상

-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주관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 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 예외)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로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역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지역 중소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의 R&D 서비스를 선택 및 활용하여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
 - * (유형) 자유공모, (기간) 1년, (예산) 연 2억원 내외
 - * 혁신(공급)기관의 범위는 R&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전문기업(K-ESP),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등)으로 한정



Ⅲ 참고.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Ⅲ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 신산업, 청색청정환경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신청·접수

- (매칭)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rip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지역 테크노파크(TP)에서 운영하는 기술교류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접수
- (과제) SMTECH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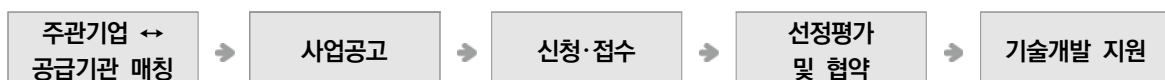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매칭) 혁신(공급)기관 등록 → 주관(희망)기업 모집 → 주관-공급기관 매칭
- (과제)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
 -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 공급기관 매칭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25, 3727, 3729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참조

알려주세요!

Q 주관(희망)기업-혁신(공급)기관 매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TP)에서 지역산업종합정보망(RIPS)을 통해 공급기관과 희망기업을 등록받은 후, 온·오프라인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과 공급기관을 매칭합니다.



Q 혁신(공급)기관이란 무엇인가요?

A 주관기관(지역중소기업)과 매칭된 R&D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소기업부에서 선정한 기술전문기업(K-ESP),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비영리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3-1

...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연구인력 150여명 내외(예산 82.8억원)
* '18년 지원현황 : 연구인력 160여명(예산 99.36억원)

지원 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 (인력)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파견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추후 변동 가능, '19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연장), 기업별 1명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신청·접수

- 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은 변동 가능, '19년 공고문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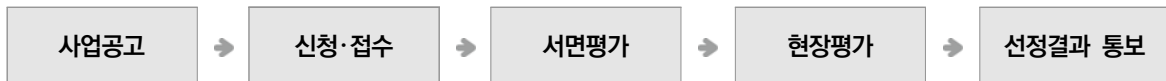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 절차



* 지원대상 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 042-481-681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287-7388, 7386, 7382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 참조

• 알려줘요!

Q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인력을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파견가능한 적정 연구인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에도 신청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지원자격을 유지합니다.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3-2

...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연구인력 711명 내외(예산 150.6억원)
- * '18년 지원현황 : 연구인력 669여명(예산 140.49억원)

지원 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채용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추후 변동 가능, '19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최대 3년, 2명이내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정부지원액) : 학사 3,000만원(1,500만원), 석사 4,000만원(2,000만원), 박사 5,000만원(2,500만원) (변동가능, 자세한 사항은 '19년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 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19년 공고문 참조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류 서면평가
 -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주세요!

-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 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A 없습니다.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Q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 A 참여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3-3

...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중소기업에서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경력을 보유한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연구인력 156명 내외(예산 56.73억원)
- * '18년 지원현황 : 연구인력 140여명(예산 52.54억원)

지원 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출신,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10년, 석사7년, 박사3년 이상 경력자 채용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추후 변동 가능, '19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5,000만원 한도)

신청·접수

- 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19년 공고문 참조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류 서면평가
 -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 042-481-681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 02-3460-9123, 9167, 9088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주세요!

-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 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 A 없습니다.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Q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 A 참여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3-4

... 기업 현장중심의 고급연구인력 양성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양성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전국 10개 컨소시엄(중소기업-대학원 컨소시엄)(예산 30억원)
* '18년 지원현황 : 전국 10개 컨소시엄(54개 기업 및 10개 대학원) 과제(예산 36.65억원)

지원 대상

- 대학원(학과)-기업(기업부설연구소)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중소 + 대학원으로 하고, 컨소시엄에 대한 총괄책임(주관기관)은 대학원에 부여
 - (연구인력) 최소 10명 이상의 대학원생 참여 조건(산학 공동 선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 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 내용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양성 모델 구축
 - 산학 프로젝트 수행,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전 과정에 기업 참여를 보장
 - 기업수요에 따른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으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참여학생의 실무 능력 향상 유도
 - 논문 부담 없이 기업이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학위 부여(프로젝트 학위제 운영)
 - *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실습장비 및 재료비,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등 지원
 - * 컨소시엄당 연간 3억원내외 최대 5년 이내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19년도 6컨소시엄 신규선발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에 전산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세부내용 및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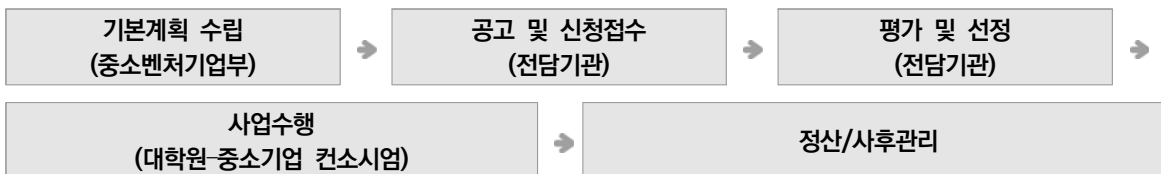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서면검토 → 발표평가 → 심의위원회
 -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역량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 042-481-681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 02-6009-339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주세요!

Q 사업에는 학부생도 참여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부생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Q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되나요?

A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학원과 공동으로 산학공동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